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검 토 보 고 서**

**<제216회 임시회>**

2013. 4. 11.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김 성 모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3년 3월 2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농촌지도과장)

### 3. 제안사유

- 우리 군 육묘장을 조성하여 가로변 화단, 꽃동산 조성에 필요한 꽃묘를 확보하고,
- 아울러 도시 여건 변화시 부지를 적정 용도로 활용코자 옥포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지원시설용지 일부를 매입코자 함.

### 4. 주요내용

- 옥포 보금자리 주택지구내 지원시설용지 매입 및 육묘장 조성

#### 【 토지매입 】

- 면 적 : 8,120㎡
- 매입예상가격 : 5,453백만원 정도

#### 【 육묘장 조성 】

- 면 적 : 8,120㎡
- 조성비예상가격 : 200백만원 정도
- 용지 이용계획
  - 꽃묘생산용 자동화 비닐하우스 : 3,300㎡
  - 비닐하우스 설치 및 꽃묘 순화용 노지 포장 활용 : 1,354㎡
  - 꽃묘생산용 노지 포장 : 1,937㎡
  - 참꽃 종자 파종 증식포 및 살구나무 묘목 양묘장 활용 : 1,529㎡

##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및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II. 검토의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옥포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농업기술센터와 인접해 있는 지원시설 용지를 매입하여 가로변 화단, 꽃동산 조성에 필요한 꽃묘 생산을 위한 육묘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꽃묘 생산을 위한 토지 매입은 투자비용 과다로 현실성을 없지만 향후 아파트 입주 등 주변 여건 변화로 공공용지 수요발생시 타 용도로도 활용 가능함으로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붙임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괄표 1부  
2) 2013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1부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괄표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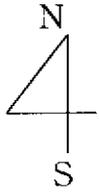
구분	당 초			금 회			계			
	건수 (필지)	수량	금액	건수 (필지)	수량(m <sup>2</sup> )	금액	건수 (필지)	수량(m <sup>2</sup> )	금액	
취득	계	5(23)	8,401	8,200,112	2(4)	8,120	5,652,840	7(27)	16,521	13,852,952
	1.매입	3(13)	5,096	3,449,548	1(4)	8,120	5,452,840	4(17)	13,216	8,902,388
	2.교환	1(10)	1,505	0				1(10)	1,505	0
처분	3.기타	1	1,800	4,750,564				1	1,800	4,750,564
	계	1(5)	1,505	0	1		200,000	1(5)	1,505	0
총계	4.매각									
	5.양여									
	6.교환	1(5)	1,505	0				1(5)	1,505	0

## 2013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m<sup>2</sup>,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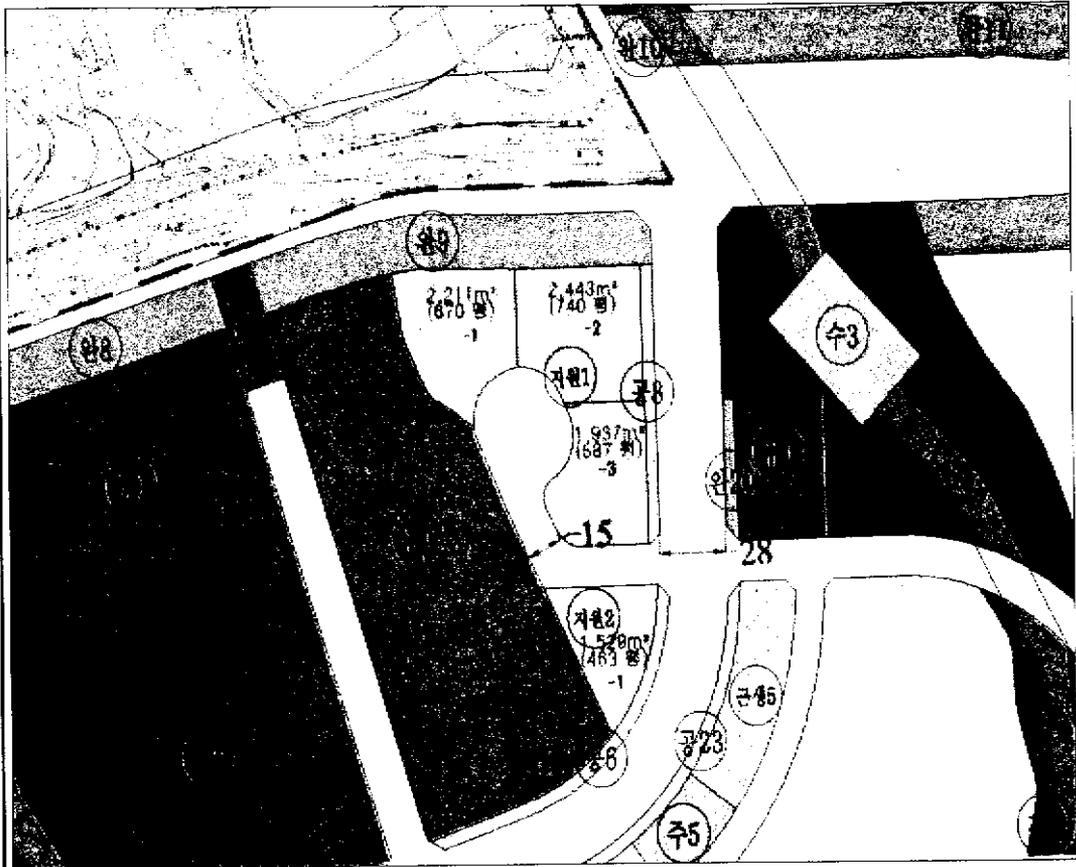
연번	지목	재산의 표시			취득(처분)대상 수량(m <sup>2</sup> )	추정가격 (천원)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처분)재산 소유자		비고
		소	제	지					주소	성명	
	공부			대지면적 (m <sup>2</sup> )							
	사실										
			합계	4	8,120	5,452,840	201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매동 172(정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 조성 중
1		읍포면		1	2,211	1,484,760	"	비닐하우스·설치 및 노지포장 활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
2		"		1	2,443	1,640,550	"		"	한국토지주택공사	"
3		"		1	1,937	1,300,760	"		"	한국토지주택공사	"
4		"		1	1,529	1,026,770	"		참꽃·살구육묘장	한국토지주택공사	"

#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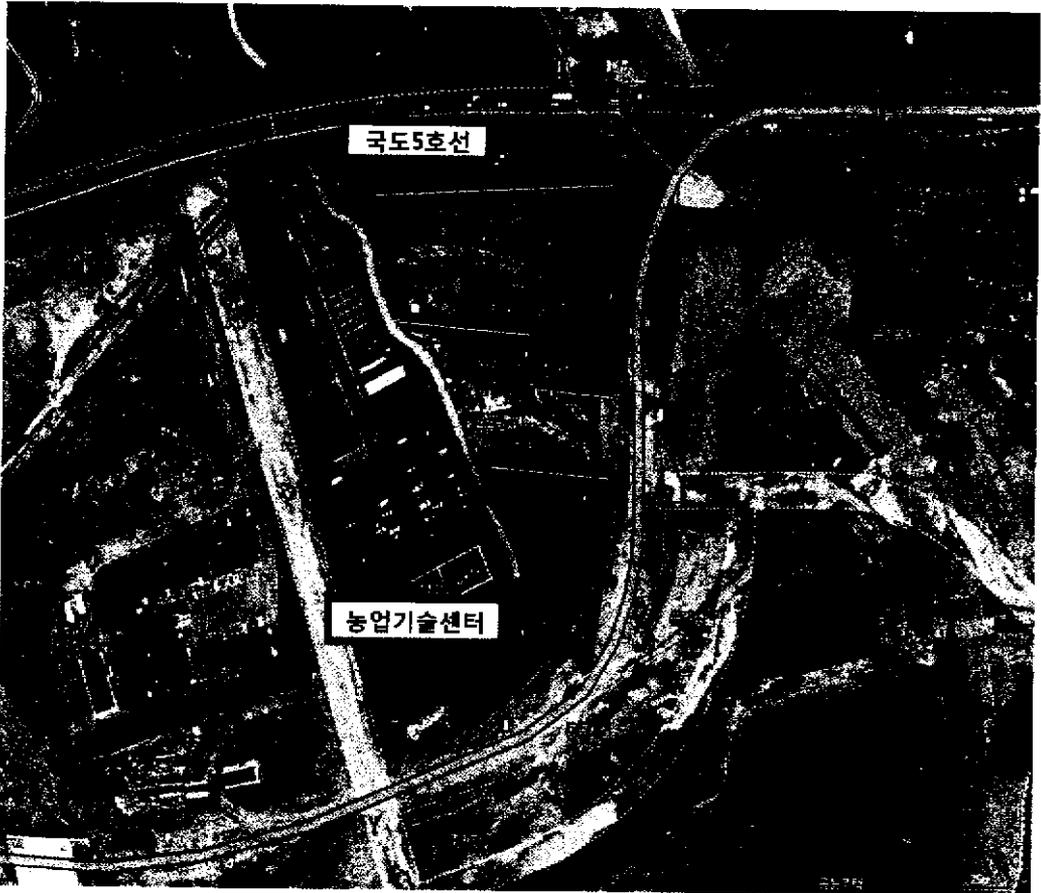
사업명 : 군 육묘장 조성사업

범 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 현 장 사 진

사업명 : 군 육묘장 조성사업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3년 3월 2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행정지원과장)

### 3. 개정이유

- 공무(公務)로 여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제3조의2 별표(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표)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숙박비 상한액 상향 조정  
- 1박당 30,000원 ⇒ 40,000원

### 5. 관계법령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여비 규정이 2013년 1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숙박비를 현실에 맞도록 1박당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표(제3조의2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군수는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40,000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붙임 2)

## 관계법령

###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내 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2.9>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⑥ 삭제

[별표 2] <개정 2013.1.9>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그 밖의 지역은 4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항공마일리지 사용에 의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3년 3월 2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행정지원과장)
3. 제안이유

○ 대구테크노폴리스 사업지구 내 현풍면과 유가면의 경계조정에 따른  
면 및 리간의 경계변경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향후 읍·면 및 리간의 관할구역과 명칭의 변경발생시 조례에  
해당 건만 별표로 추가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나. 【별표】 현풍면·유가면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

##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대구테크노폴리스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현풍면과 유가면의 면간 경계와 더불어 현풍면 상리, 중리, 원교리와 유가면 음리, 쌍계리, 용리, 봉리, 상리, 금리, 유곡리의 리간 경계를 도로 등을 기준으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과 입주 업체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이견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간 관할구역 조정)** ① 달성군 현풍면·유가면간 편입지역은 아래와 같다.

1. 현풍면의 관할구역에 유가면 쌍계리, 상리, 금리 별표의 지역을 편입한다.
2. 유가면의 관할구역에 현풍면 상리, 중리, 원교리 별표의 지역을 편입한다.

② 달성군 현풍면·유가면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아래와 같다.

1. 현풍면의 관할구역에서 제1항제2호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다.
2. 유가면의 관할구역에서 제1항제1호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다.

**제3조(리간 관할구역 조정)** ① 달성군 현풍면 상리, 중리, 원교리의 관할구역조정은 별표와 같다.

② 달성군 유가면 음리, 용리, 봉리, 상리, 금리, 유곡리의 관할구역조정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해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 1. 제출일 : 2013년 3월 28일
- 2. 제출자 : 달성군수(토지정보과장)
- 3. 제안이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062호)이 2011. 9. 16. 제정되어 2012. 3. 17. 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30조 및 제31조에서 규정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 나. 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내지 제6조)
- 다.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 라.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 마. 위원회 회의 및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 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

## 5.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을 위해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적공부 정리 정지대상, 지목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을 결정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위해 설치되는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적불부합 지역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1조에서 규정된 사항을 각각 심의·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구성하고, 지적재조사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위촉위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운영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회부한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에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제3항과 같다.

⑥ 법 제30조제7항 및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⑧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전심의회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③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전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⑦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⑧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

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경계분쟁이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저장 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 그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 할 수도 있다.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관계법령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 ① 시·군·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시·군·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 2.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 3.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시·군·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해당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
  -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⑥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⑦ 시·군·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그 밖에 시·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전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⑧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⑨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⑪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경계의 결정)

①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조서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안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⑥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①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분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지 여부를 지적소관청

에 알려야 한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5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의 필지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관하여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 ①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은 그 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토지소유자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소관청에 대한 우선사업지구의 신청
  2. 일필지조사에 대한 입회
  3. 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입회
  4. 지적공부정리 정지기간에 대한 의견 제출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결정
  6. 제31조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추천
-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

- 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같이 하는 토지소유자들이 경계에 합의한 경우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국유지·공유지가 경계를 같이 하는 토지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지적소관청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결정)**

지적재조사측량성과와 지적재조사측량성과에 대한 검사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일 때에는 해당 지적재조사측량성과를 최종 측량성과로 결정한다.

1. 지적기준점:  $\pm 0.03$ 미터
2. 경계점:  $\pm 0.07$ 미터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3년 3월 2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문화체육과장)

### 3. 개정이유

- 군립합창단을 문화예술전문기관으로 이관함에 따라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 운영 및 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위탁 운영에 대한 규정 마련 (안 제9조)

###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군립합창단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우리 군에서 출연한 문화예술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군립합창단의 수준 향상과 단원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이견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탁 운영) 합창단의 운영은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출연 문화예술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p>	<p>제9조(위탁 운영) 합창단의 운영은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출연 문화예술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p>          <p>제10조(시행규칙) ----- -----</p>

붙임 3)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3년 3월 2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도시시설과장)
3.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의 부패유발 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권고에 따른 위원 연임위촉 제한, 위원 청렴성 검증 강화, 회의록 공개를 강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의 부패 유발 요인 차단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는 1회로 제한, 위원 위촉시 청렴서약서 제출, 회의록 공개 시점을 심의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에 공개토록 함 (안 제4조 제1항·제3항, 제11조 제3항)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원장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과 군도시 계획위원회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규정을 반영하고자 함 (안 제3조 제2항)

다. 공동위원회와 서면심의는 현행 조례상의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운영하고 있으나, 회의 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운영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안 제6조, 제13조)

## 5.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도시계획 심의과정의 부패유발 요인 차단을 위해 민간위원의 연임은 1회에 한하도록 하고, 청렴성 강화를 위해 청렴서약서 제출, 투명한 운영을 위한 회의록 공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상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에 따른 위원장 임명, 민간위원 구성비율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군수가 되며”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분의2”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군의 공무원”을 “군의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②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③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간사와 서기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회의록은 3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u>부군수가 되</u> <u>며</u>,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다.</p> <p>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u>3분의 2이상</u>이어야 한다.</p> <p>1. (생략)</p> <p>2. <u>군의 공무원</u></p> <p>3. (생략)</p>	<p>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 -----.</p> <p>③ &lt;삭제&gt;</p> <p>④ ----- ----- ----- ----- -----50퍼센트-----.</p> <p>1. (현행과 같음)</p> <p>2. <u>군의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u></p> <p>3. (현행과 같음)</p>
<p>제4조(위원의 임기) <u>의원 또는 공무</u> <u>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u> <u>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u> <u>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u> <u>한다.</u></p>	<p>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 다.</p> <p>②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 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6조(회의운영)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u>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u>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p> <p>&lt;신설&gt;</p>	<p>③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u>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6조(회의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u>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u>)으로 -----, -----.</p> <p>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p> <p>④ 서면심의는 <u>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p> <p>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된다.</p> <p>③ (생략)</p>	<p>제8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간사와 서기는 <u>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u></p> <p>-</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회의통지 및 회의록) ① ~ ② (생략)</p> <p>&lt;신설&gt;</p>	<p>제11조(회의통지 및 회의록)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회의록은 3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u></p>

현 영	개 정 안
<u>&lt;신설&gt;</u>	제1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공 동위원회의 운영은 제5조부터 제6 조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붙임 3)

## 관계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2조제1항제4호 중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④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대도시에 두는 경우를 말한다)"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본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3년 3월 2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치수방재과장)
3. 제안이유

○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목적 (안 제1조)
- 나.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에 대한 사항 (안 제5조)
- 다. 위험도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 경비지원 등에 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

## 5. 관계법령

-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따라 평가단의 구성, 위험도 평가시기와 현장조치,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 요청,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과 피해 보상 등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견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재해”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동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에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는 지진재해 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해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달성군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4.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달성군 및 인근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달성군 관할

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달성군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달성군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달성군지역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되는 경우
-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또는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달성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달성군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달성군지역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달성군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달성군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④ 달성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달성군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 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⑥ 달성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이 달성군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하는 경우 달성군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달성군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달성군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달성군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별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기타 위험도 평가시 필요한 사항 등

② 달성군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

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 ④ 달성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 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를 달성군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달성군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달성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 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달성군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및 인근 자치단체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 ② 달성군지역본부장은 대구광역시 및 타 자치단체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달성군지

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달성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달성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달성군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신청서

회원번호		신청일	
성명		주민번호	
소속		직급	
주소 : (      -      )		전화 : (      )	
		FAX : (      )	
E-mail :			
전문분야 : <input type="checkbox"/> 건축물 <input type="checkbox"/> 교량·터널 <input type="checkbox"/> 댐·저수지 <input type="checkbox"/> 철도 <input type="checkbox"/> 원자력시설 <input type="checkbox"/> 항만 <input type="checkbox"/> 가스·전력·통신 <input type="checkbox"/> 기타(                              )			

본인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단원(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별지 제2호 서식]

< 앞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 사 진

소 속 :

주 소 :

위 사람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mm×90mm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Tel : 053-668-28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mm×90mm

[별지 제3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

# 위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가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별지 제4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

# 주의!

**본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에 주의바람.**

□ 평가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별지 제5호 서식]

(문용) (문용) (문용) <문용>

# 사용가능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열거처 :  
 풍가읍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별지 제6호 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문용>

# 출입통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붙임 2)

## 관계법령

### □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 ①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3년 3월 2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치수방재과장)
3. 제안이유

○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이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위 제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행위제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및 표지판 설치 (안 제5조~제6조)
- 다.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안 제7조)

## 5.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 고시 및 표지판설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제한 등 자연재해 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견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의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은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에 따른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별표 1]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 (제6조제1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b></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달성군청 치수방제과 T 668-299175 달성군수</p> </div>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bottom: 10px;"> <div style="margin-right: 10px;">침수위선(적색) →</div>  <div style="margin-left: 10px;">문자로 침수위선 표기</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right: 10px;">침수흔적(청색 삼각형)</div>  <div style="margin-left: 10px;">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색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li> <li>○ 안내판 규격 : 가로 1.2m                   세로 1m 내외</li> <li>○ 기둥 규격 :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li> <li>○ 색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기둥은 10cm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예시 참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li> <li>○ 재질 :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li> <li>○ 침수위선 표기 : 1cm 두께의 빨강색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예시 참조)</li> <li>○ 침수흔적 표기 :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 (예 : ▶ 태풍루사, 2002)</li> <li>○ 설치장소 :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li> <li>○ 설치개수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li> </ul>

[별표 2]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 (제6조제2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p style="text-align: center;"><b>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p>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p> </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p>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달성군청 치수방재과 T 668-299175 달성군수</p> </td> </tr> </table>	<p>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p>	<p>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달성군청 치수방재과 T 668-299175 달성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내판 규격 : 가로 1.2m                   세로 1m 내외</li> <li>○기둥 규격 :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li> <li>○색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은 노랑색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li> <li>○재질 :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li> <li>○설치장소 :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li> <li>○설치개수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li> </ul>
<p>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p>	<p>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 달성군청 치수방재과 T 668-299175 달성군수</p>		

붙임 2)

## 관계법령

###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자연재해위험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 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3년 3월 2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치수방재과장)
3. 제안이유

○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나.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설치 (안 제2조)
- 다. 협의회 구성 운영 및 회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 라. 협의회 기능 (안 제5조)

## 5.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시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하고 결과 보고서 활용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향후 우리 군의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견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달성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달성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달성군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 업무 담당 국에 “달성군 자연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 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서 10개 이내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달성군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간사는 업무 주관 과장이, 서기는 업무 주관 담당이 한다.

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달성군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체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이상 참석 및 과반수이상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

5.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4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달성군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의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 업무)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 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의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직무)** 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달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3조, 제4조에 의한 수당·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의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달성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등록(변경) 신청서

회원번호		희망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방	<input type="checkbox"/> 대비·대응
접 수	년 월 일	업무 분야	<input type="checkbox"/> 복	<input type="checkbox"/> 구	<input type="checkbox"/> 정책관련

개인·기관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위 및 성명					
주소 : (      -      )			전화 : (      )		
			FAX : (      )		
E-mail :					
Home-page :					
담당자 직위 및 성명 :	연락처	사무실 :			
		휴대전화 :			
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					

위 기관(단체)은 '달성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변경)하고자 「달성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 :

인

[별지 제2호 서식]

달성군 제○○호

## 회 원 증

개인·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사업자 등록 번호) :

주 소 :

위 개인·기관(단체)은 「달성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 제3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달성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회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붙임 2)

## 관계법령

### □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 ①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필요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할 수 있다.
- ② 지역본부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3년 3월 2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농업정책과장)
3. 개정이유

- 달성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에 있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의거 재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2011년 11월 2층 내부 리모델링공사로 인하여 건물연면적이 22,079㎡에서 22,684.4㎡로 증가 (안 제3조)
- 나. 달성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수탁 사업자의 재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위·수탁사업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6조제2항)

##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의 규정에 맞도록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 2011년 11월 시행한 2층 리모델링 공사로 건축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면적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달성군이 설치하는 달성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 라 한다)”를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수산물 이라 함은”을 “농수산물이란”으로, “농림부령이”를 “관련 부처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종합유통센터 라 함은”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운영주체 라 함은”을 “운영주체란”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표 중 “건물”란을 “건물연면적”란으로, “22,079.52”를 “22,689.4”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달성군수(이하 군수”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로,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농림수협 등(법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3년단위”를 “5년단위”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정한 때”를 “선정한 경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익월”을 “다음 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첨부하여”를 “붙여”로 한다.

제11조 중 “사업연도는 군”을 “사업연도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1조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22조 중 “제21조의 규정에”를 “제21조에도”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한 때”를 “한 경우”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달성군이 설치하는 달성군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수산물 이라 함은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산물을 말한다.</li> <li>2. 종합유통센터 라 함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li> <li>3.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 라 함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li> </ol>	<p>제2조(정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수산물이란 ----- ----- 관련 부처령으로 ----- -----.</li> <li>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란 ----- ----- ----- ----- ----- -----.</li> <li>3. ----- 운영주체란 ----- ----- 제6조에 따른 ----- -----</li> </ol>
<p>제5조(개장일 및 운영시간) ① (생략)</p>	<p>제5조(개장일 및 운영시간) ① (현행과 같음)</p>

②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 라 한다)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위탁) ①군수는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협 등(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

2.~ 3.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상 10년이내로 위탁하며, 필요한 경우 3년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략)

제7조(위탁신청) ①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②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 제1항에도 -----

제6조(위탁) ①-----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농림수협 등(법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

2.~ 3.(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

5년단위-----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탁신청) ①-----

1.·2. (현행과 같음)

3. ----- 해당 -----

<p>4. ~ 6. (생략)</p> <p>7. <u>기타 종합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②군수는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u>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u></p> <p>제8조(이용료) ①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종합유통센터의 이용료는 <u>당해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정한다.</u></p> <p>② (생략)</p> <p>제9조(운전자금 확보) ①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u>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거래예상액</u>)의 1천분의 15 이상으로 한다.</p> <p>②운영주체는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 현황을 매분기말 기준 <u>의월 5일 이내</u>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주체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u>첨부하여</u>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1조(사업연도) 종합유통센터 <u>사업연도는</u> <u>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u></p>	<p>4. ~ 6. (현행과 같음)</p> <p>7. <u>그 밖에</u> ----- ----- -----</p> <p>②----- ----- <u>선정한 경우</u> ----- ----- -----</p> <p>제8조(이용료) ①----- ----- <u>해당</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운전자금 확보) ①----- ----- ----- <u>해당연도</u> ----- ----- -----</p> <p>②----- ----- <u>다음 달</u> ----- -----</p> <p>③----- ----- ----- <u>붙여</u> ----- -----</p> <p>제11조(사업연도) ----- <u>사업연도는</u> <u>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u>-----</p>
---	--

<p>제12조(운영) ①·② (생략)</p> <p>③운영주체는 농수산물 표준화·기계화·규격화·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출하 촉진방안을 강구하는 등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⑤운영주체는 개장 1월전에 당해 종합유통센터의 일반현황, 도·소매에 관한 사항,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현황, 가격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고객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해당 ----- ----- ----- ----- ----- ----- ----- ----- ----- -----</p>
<p>제14조(대금결제)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당해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p>	<p>제14조(대금결제)</p> <p>----- ----- ----- ----- ----- ----- ----- ----- ----- -----</p>
<p>제16조(운영위원회) ① ~ ③ (생략)</p> <p>④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기타 군수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16조(운영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그 밖에 ----- ----- ----- -----</p>
<p>제18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p>	<p>제18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p>

<p>(생략)</p> <p>②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안전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제21조(시설반환) 운영주체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보증인·청산인·대리인 또는 운영주체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p> <p>제22조(대집행)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p> <p>제23조(위탁의 취소 등) ①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p>1.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p> <p>2. (생략)</p> <p>② (생략)</p> <p>제24조(휴·폐업 허가) ① (생략)</p>	<p>(현행과 같음)</p> <p>②----- ----- ----- ----- 그 밖의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21조(시설반환)----- ----- 그 밖의 ----- ----- ----- ----- -----.</p> <p>제22조(대집행) ----- 제21조에도 ----- ----- ----- -----.</p> <p>제23조(위탁의 취소 등) ①----- ----- 각호의 어느 하나에----- ----- ----- -----.</p> <p>1. 제6조제3항에 따른 ----- -----</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4조(휴·폐업 허가) ① (현행과 같음)</p>
--	---

<p>②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폐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30일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수는 폐업허가를 <u>한 때에는 이를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u></p> <p>제27조(감독 등) ① (생략)</p> <p>②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u>각호의 1에</u> 해당되는 경우에는 <u>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u>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②----- ----- ----- ----- <u>한 경우</u> ----- -----.</p> <p>제27조(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각호의 어느 하나에</u>----- <u>법 제69조제3항에 따라</u> ----- -----.</p> <p>1. ~ 3. (현행과 같음)</p>
---	--

붙임 3)

## 관계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① 법 제 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종합유통센터의 운영

- ① 법 제 6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이하 이 조에서 "운영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농림수협등(법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
  2.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②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이조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농수산물의 수집능력·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및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③ 위탁자는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주체로부터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총액은 해당 종합유통센터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탁자는 이용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해서는 아니된다.